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10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6. 체결된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나.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4번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11. 16. 접수 제23901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07. 9. 3. 접수 제17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23. 접수 제030472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피고 B은 D의 어머니이고, 피고 C는 D의 누나이다.
- 2) 원고는 D과 2017. 3. 15. 혼인하였다가 2019. 4. 18. 협의이혼을 한 D의 전(前)배우자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D은 2018. 12. 31. 원고에게 “D은 2018. 12. 31. 현재 원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될 협의이혼 합의금이 500만 원임을 승인하고, 201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작성의 증서 2018년 제943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 2) 원고와 D이 협의이혼(전주지방법원 2018호협1997)을 하면서 “D은 원고에게 미성년자녀 F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을 매월 23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2019. 4. 18. 작성되었다.

다. 부동산 등 소유권 변동

-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B은 2007. 8. 2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D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9. 3. 접수 제1775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B과 D은 2020. 11. 16. 위 가)항 기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였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 11. 16. 접수 제23901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3) D은 2020. 11. 23.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4번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1) 피고 C는 같은 날 접수 제030472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4) D은 이 사건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긍정)

이 사건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 이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약정금채권과 양육비채권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긍정)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이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의 상대방이 D의 어머니 내지

누나이고 피고들도 모녀관계에 있는 점, ② 2021. 11. 23.자 답변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은 D의 양육비 지급의무 등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불과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합의해제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다. D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차를 피고들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합의해제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환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포기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피고 C가 D에게 어느 정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래 피고 C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명의만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D의 사해의사(긍정)

D과 피고들이 모자 내지 남매관계에 있다는 점,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비교적 거액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특히 피고 B 부분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형태이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합의해제 및 매매계약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D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B와 채무자인 D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해제, 수익자인 피고 C와 채무자인 D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피고 C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D이 약속했던 조건(피고 B의 거주권이 불확실해지거나 D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2)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D이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한 뒤 일주일 만에 자동차까지 자신의 누나에게 이전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등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3)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것은 D과의 채권채무관계의 이행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 C와 D 사이에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식

[별지]

목 록

1. 남원시 G 대 221㎡

2. 남원시 H 대 380㎡

3. 남원시 G 외 1필지

 [도로명주소] 남원시 I

 벽돌조 슬래즈지붕

 단층주택 83.03㎡

 부속건물

 벽돌조 스트레지붕

 단층축사 28.86㎡

4. 자동차 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제원관리번호 : A01-1-00053-0033-1213

 차명 : K3

 차종 : 승용 중형

 차대번호 : J

 원동기형식 : G4FD

 연식(모델연도) : 2014

 최초등록일 : 2014-03-31

 제작연월일 : 2014-03-17

 사용본거지(차고지) : 김포시 K건물, L호. 끝.

1)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현출된 바는 없으나, 피고 C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2) 채무자가 제3자와 계약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3자에게 채무자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경우, 위 합의해제가 ‘채무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경우 외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합의해제가 채무불이행 문제의 해결 방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수익자인 제3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확보할 양육비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